

#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(안 제4조)
- 다. 재정지원 근거 규정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규정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라. 감염병대응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(안 제8조 ~ 안 제9조)
- 마.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)
- 바.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및 포상 규정(안 제11조 ~ 안 제12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 합의되었음

##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(危害)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, 구미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에 위해(危害)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수립
2.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
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6.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
7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호

8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·방역 물품의 비축·관리
9.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10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11.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·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

**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**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감염병 예방·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주요 감염병의 예방·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
3. 감염병 대비 물품·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
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6.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5조(방역대책반 운영)** ① 시장은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방역대책반(이하 “방역대책반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

할 수 있다.

② 방역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
2.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
3.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보호
5.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방역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사업)**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민·기관·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의료·방역 물품 지원 사업
2. 감염병 예방·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
3. 감염병위기 시 「의료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방역시설 개선사업
4.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(법 제70조의 4에 따름)
5.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,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, 관련기관, 단체 등과 필요

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감염병대응지역협의체의 운영)** ①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 사항 발생 시 감염병 대유행 및 확산을 방지하고,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감염병대응지역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.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

1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및 감염병 대응 방안
2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9조(감염병대응지역협의체의 구성 등)**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미보건소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업무 관련 공무원, 공공기관, 보건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 다만, 위원의 자격,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협의체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병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

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
2.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
**제10조(교육 및 홍보)**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·배포할 수 있으며,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.

**제11조(예방접종)**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 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**제12조(포상)**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

· 기관 · 법인 · 단체 등에 대하여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  
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2.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
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6.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
7. 감염병병원체(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,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) 수집·검사·보존·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監視)
8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- 8의2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
9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10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·방역 물품의 비축
11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
12. 기후변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

조사·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

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
14.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
15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
16.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

17.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, 특성 분석,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, 보고서 발간 및 지침(매뉴얼을 포함한다) 고시

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·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**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감염병 예방·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주요 감염병의 예방·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

2의2. 감염병 대비 의료·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3.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

3의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  
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

4.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

5.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

6.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  
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  
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이  
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 
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 
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# 제40조의4(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·방역 물품의 비축)
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  
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 
대비 의료·방역 물품을 비축·관리하고,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  
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 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

가. ~마. 생략

**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**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
7. 국제교류 및 협력

#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, 제2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「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 관련, 본 조례안 제정에 의하여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에 대하여 현재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경우로,
- 2022년도 본예산에 기준 예산 미편성 사업으로, 해당 ‘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등’ 추진을 통해 신규사업이 발굴되면 향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,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 및 절차에 따라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.

### 4. 작성자

-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김양훈(054-480-4047)

| 소 관 부 서     |       | 감염병관리과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이 정 숙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팀 장   | 강 영 희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김 양 훈<br>(480-4047) |